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00623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0062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소7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웅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5. 23.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소7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공조기기 설치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8.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거제시는 2021. 7. 23. 피고와 사이에 D 도시재생 공공시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91,601,4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경 거제시의 이 사건 공사 담당 주무관 E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10. 25. 거제시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조기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총 9,116,800원(공사비 8,288,000원 및 부가세 828,8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12. 6.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에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송신하였다.

라. 거제시와 피고는 2021. 12.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 공사분 반영에 따른 물량 변경에 따라 3회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원가계산서상 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346,962,620원(공급가액 315,420,557원 및 부가세액 31,542,055원)으로 약정되었고, 여기에는 공종별 금액으로 원고의 공조기기 설치공사비용

7,302,225원, 간접노무비 11,658,074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14,396원 등을 비롯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마. 거제시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공조기기 설치공사비용 7,302,225원은 순공사비로서, 원고의 견적서상 공사비 8,288,000원에서 낙찰율 0.88102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 14.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거제시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이 정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2, 4, 5,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거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거제시 담당 주무관 E을 통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F로부터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조기기 설치공사대금 7,302,225원 및 부가가치세 730,222원을 합한 금액인 8,032,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현장소장 F의 사용인으로서 F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고가 지급받은 공조기기 설치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은 공사원가 7,302,225원 중 종합건설업 영위를 위한 간접노무비 및 안전관리비 등 15%를 공제한 6,207,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담당 주무관 E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E은 거제시에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거제시에게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F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와 거제시는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포함한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거제시로부터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 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변경계약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피고의 직원 G는 2022. 1. 27.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여기 현장 일은 잘 모르는데 올라와서 우리가 본사에 이걸 올렸지만, 본사에서 조금 네고가 된 모양이라’라고 말하며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대금을 64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2. 2. 18.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600만 원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2022. 3. 11.경에는 공사대금을 600만 원으로 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세부공정 중 하나로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가 추가로 진행된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한다는 점,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 금액의 규모, 거제시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의 공사대금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거제시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원고가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시공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1. 14.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8,032,447원(=공사비 7,302,225원 + 부가가치세 730,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간접노무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6. 8. 원고와 E, G가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제가 견적서를 넣으면 거기에, 제 견적서는 그냥 제가 받을 금액을 넣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쪽, 이제 건설사에서 거기에 간접노무비라든지 더 붙여가지고 시청으로 최종견적을 넣는 겁니다. 맞죠?’라고 말하자 G가 ‘예, 맞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간접노무비 등은 하도급인인 피고가 원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비용의 성격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청구하여 거제시로부터 이를 모두 지급받은 점,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노무비, 법인세, 안전관리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조기기 설치공사 대금 8,032,447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장욱, 판사 이정현, 판사 구민경